

# 충주시립우특국악단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39
----------	------

제출년월일 : 2010. 03. .  
제 출 자 : 충 주 시 장

## 1. 제안이유

종전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고 국악단의 연주수준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단원의 규모 확대와 자격 및 전형과 위촉의 방법을 규정하고 정기평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공연 입장료 및 외부출연수입금 세입근거를 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단원의 구성을 55명 이내로 하고 상임단원 40명 이내, 비상임 단원 15명 이내로 규모를 확대(안 제2조)
- 나. 단원의 자격을 관련학과 4년제 대학이상 교육을 받은 자 또는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활동경험이 있는 자로 함(안 제5조)
- 다. 단원은 공개전형을 통한 위촉을 원칙으로 함.(안 제7조)
- 라.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정기평정을 실시하고 실기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을 4명 이상으로 위촉(안 제9조)
- 마. 공연 및 외부출연수입금을 시의 세입으로 함.(안 제25조, 제26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의 : 해당없음
-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10 . 01 . 29~ 02 . 18 )결과 : 불임과 같음
  - (2) 규제심사대상

- ③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소속단원의 기량연마와 연주를 지휘 한다.
- ④ 직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단원의 자격) ① 단원은 관련학과 4년제 대학이상 교육을 받은 자 또는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활동경험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② 단원의 연령은 18세 이상 55세 이하로 한다.

제6조(단원의 임기) 상임단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비상임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정기평정 결과에 의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7조(전형과 위촉) ① 상임단원은 시장이 위촉하고 비상임 단원은 단장이 위촉한다.  
② 단원은 공개전형으로 위촉한다. 다만, 지휘자는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이상 교육을 받은 자 또는 국내·외에서 지휘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공개 전형 또는 특별전형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하고 비상임 단원에 대하여는 관련학과 4년제 대학이상 교육을 받은 자 또는 해당분야 연주경험과 전국대회 수상경력이 있는 자를 지휘자의 추천에 의하여 특별전형을 거쳐 단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전형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단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9조(평정) ① 국악단의 발전과 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하여 매년 12월에 정기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평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근무평정은 지휘자가 평정자가 되고 확인자는 단장이 된다.  
③ 실기평정은 평정일 2일전 까지 국악계의 유능한 외부인사 4명 이상

의 심사위원을 단장이 위촉하여 평정하고, 수시평정은 지휘자가 평정한다.

④ 그 밖의 평정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급여 및 실비보상)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서약) 단원은 입단할 때에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책임완수) 단원은 국악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13조(품위유지) 단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복종의 의무) 단원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단장 및 지휘자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15조(겸직금지) 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 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출연금지) 단원은 단장이 주관하는 공연 이외의 공연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타 공연출연 승인신청서를 공연 5일전까지 단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근무시간 등) 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은 휴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기타 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휴가의 종류) 상임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단원의 해촉)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는 자
2.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연주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3. 평정결과 시장이 정하는 기준 이하의 평정등급을 받은 자
4. 기타 법령 등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20조(징계) ① 단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처분 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단장 및 지휘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연주와 공연에 불참하거나 국악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자
  2. 국악단 활동을 방해하거나 위신과 권위를 손상시킨 자
  3. 상임단원이 단장의 사전 승인없이 자체공연 이외에 다른 공연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때
  4. 단원으로서 직무를 위반하거나 임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5.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때
  6. 무단지각 6회 이상, 무단결근이 3회 이상일 때
- ② 기타 조례, 규칙에 의한 지시·명령을 위반한 자

제21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해촉, 출연정지,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며 처벌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징계의 효력) ① 징계에 따라 해촉된 자는 3년간 단원이 될 수 없다.

② 출연정지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며 출연정지 기간은 보

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며 처분 기간 중에는 본봉의 3분의1을 감하여 지급한다.

④ 견책은 잘못한 행위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23조(징계위원회 구성) ① 단원의 징계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충주 시립우륵국악단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위원은 문화예술업무담당국장, 인사업무담당과장, 문화예술업무담당과장, 지휘자로 하고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이 된다.

④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충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24조(징계의 절차) 단원에 대한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행한다.

제25조(입장료의 징수) ① 국악단의 공연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내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발행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유료입장권은 위탁 판매할 수 있으며 이경우 입장권 판매총액의 20 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국악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가입된 회원에 대하여는 5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⑤ 입장권의 판매 수익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⑥ 입장료는 공연별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외부출연수입금) ① 국악단이 외부출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시의 세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부출연의 수입금에 관하여는 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수입금의 60퍼센트 이내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운영계획) 지휘자는 소속 단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연계획을 포함한 다음 연도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2월 15일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 [참고12]

### 입법예고 의견처리결과 통지

제출 의견	검토 결과	반영여부
제7조(전형과 위촉)지휘자를 특별전형으로 위촉하는 방법과 비상임 단원을 지휘자가 특별전형하는 방법은 공정성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며 비리 발생 가능성이 큼. 특별전형의 가능성과 예외를 두기보다는 공개채용 원칙을 확고히 하는 것이 부정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음.	지휘자 및 비상임단원 선발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휘자는 국악단 운영에 있어 책임자로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전형을 예외규정을 두었으며, 비상임 단원은 위촉기간이 1년이므로 결원 보충을 위해 필요함. 특별전형시 객관성 확보를 위해 자격기준을 명시 하였음	미반영
제9조(평정)① 국악단의 발전과 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매 2년마다 연말에 정기 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평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근무평정은 악장이 평정자가 되고 확인자는 단장이 된다  ③실시평정 심사위원은 5명이상 10인 이내로 위촉	①전국 국악단중 매년 실시하는 곳이 많으며 수시평정과 근무평정은 매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정기평정도 매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근무평정을 단원이 단원을 평가할 수 없으며, 국악단의 지휘체계 및 운영을 위하여 국악단 책임자인 지휘자로 함이 타당함. ③ <u>설기평정 심사위원은 4인 이상으로 한다.</u>	미반영 미반영 반영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려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4) 부대시설 사용료</p> <p style="text-align: center;">(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25%;">종별 구분</th> <th style="width: 25%;">사용단위</th> <th style="width: 25%;">금 액</th> <th style="width: 25%;">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농구대 대여</td> <td>1회 1조</td> <td>10,000</td> <td></td> </tr> <tr> <td>배구지주 대여</td> <td>1회 1조</td> <td>5,000</td> <td></td> </tr> <tr> <td>핸드볼 골대</td> <td>1회 1조</td> <td>5,000</td> <td></td> </tr> <tr> <td>배드민턴 지주</td> <td>1회 1조</td> <td>5,000</td> <td></td> </tr> </tbody> </table>				종별 구분	사용단위	금 액	비 고	농구대 대여	1회 1조	10,000		배구지주 대여	1회 1조	5,000		핸드볼 골대	1회 1조	5,000		배드민턴 지주	1회 1조	5,000		<p>(4) 부대시설 사용료</p> <p style="text-align: center;">(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25%;">종별 구분</th> <th style="width: 25%;">사용단위</th> <th style="width: 25%;">금 액</th> <th style="width: 25%;">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농구대 대여</td> <td>1회 1조</td> <td>10,000</td> <td>전용사용 자에 한함</td> </tr> <tr> <td>배구지주 대여</td> <td>1회 1조</td> <td>5,000</td> <td>전용사용 자에 한함</td> </tr> <tr> <td>핸드볼 골대</td> <td>1회 1조</td> <td>5,000</td> <td>전용사용 자에 한함</td> </tr> <tr> <td>배드민턴 지주</td> <td>1회 1조</td> <td>5,000</td> <td>전용사용 자에 한함</td> </tr> </tbody> </table>				종별 구분	사용단위	금 액	비 고	농구대 대여	1회 1조	10,000	전용사용 자에 한함	배구지주 대여	1회 1조	5,000	전용사용 자에 한함	핸드볼 골대	1회 1조	5,000	전용사용 자에 한함	배드민턴 지주	1회 1조	5,000	전용사용 자에 한함
종별 구분	사용단위	금 액	비 고																																												
농구대 대여	1회 1조	10,000																																													
배구지주 대여	1회 1조	5,000																																													
핸드볼 골대	1회 1조	5,000																																													
배드민턴 지주	1회 1조	5,000																																													
종별 구분	사용단위	금 액	비 고																																												
농구대 대여	1회 1조	10,000	전용사용 자에 한함																																												
배구지주 대여	1회 1조	5,000	전용사용 자에 한함																																												
핸드볼 골대	1회 1조	5,000	전용사용 자에 한함																																												
배드민턴 지주	1회 1조	5,000	전용사용 자에 한함																																												

##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찬성자명부

의 원 명	서 명	비 고
장상교	장상교	
홍진우	Hong	
김종성	Kim	
강병관	강병관	
한병주	한병주	
김재봉	김재봉	
김재봉	김재봉	
이종기	이종기	